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5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김성주・이상헌・홍성국

조승래・강선우・이용빈

신영대 • 서동용 • 임호선

최종윤 • 윤준병 • 이탄희

허종식 · 정춘숙 · 이학영

송재호 · 이형석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 실제 최근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집단감염 사례의 주요 원인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이었음.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 등의 경우 과태료만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는 운영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뿐 아니라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 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와 환자 등의 전원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 장 관을 추가하였음.

또한, 최근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00 사스, '09 신종플루, '15 메르스, '18 메르스,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지고 있고,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감염병 유행이후 사후적 대응을 넘어 상시적인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다중이 밀집하여 감염전파의 위험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방역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함.

아울러,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전에 효과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 서울에서 시작된 방문판매업발 집단감염의 경우 경기, 충남 및 대전까지 확산 된 사례가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자원 배분, 격리 및 소독조치 등 각종 조치 권한을 갖는 역량있는 방역관의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임. 현재 질병관리청장만이 감염병 유행시 방역관에 대하여 한시적 종사명령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에도 한시적 종사명령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단위 방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을 통해 전국 단위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제49조, 제49조의3 및 제60조의3 및 제83조).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질 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오염된 건물"을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운영을 한 경우
- 2.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한 경우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

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운영표지 등의 제거 · 삭제
-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적법한 장소나 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3(방역관리자) ①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은 해당 사업장이나 시설 의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②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이나 시설의 장 등은 방역관리자 지정 현황,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방역관리자 의무지정 사업장이나 시설의 기준 방역관리자의 역할, 의무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60조의3제2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3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

3.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9조의3, 제83조제3항제2호의3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 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 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 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 이송 (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12의2. (생 략)
- 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생략) ② (생략) <신 설>

<u></u> 利2
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
1. ~ 12의2. (현행과 같음)

-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 13. -----오염되었거 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 되는 시설 또는 장소-----
 - 1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 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1.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운영을 한 경우
- 2.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한 경우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운영표지 등의 제거・삭제
-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적법한장소나 시설이 아님을 알리는게시물 등의 부착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의3(방역관리자) ①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하여일 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은 해당 사업장이나 시설의 방역관리 위험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세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생 략)

② <u>질병관리청장</u>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 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
 도 평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②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이나 시 설의 장 등은 방역관리자 지정 현황,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④ 방역관리자 의무지정 사업 장이나 시설의 기준 방역관리 자의 역할, 의무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생략) (현행과 같음)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 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의2. (생 략) <신 설>
- 3. ~ 5.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 략) <신 설>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_</u>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u>자</u>
3. ~ 5. (현행과 같음)
4
1.•2. (현행과 같음)
3.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을 이수하지 않은 자
<u></u> (현행과 같음)